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되어 우선출자,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영공시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우선출자 발행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14까지 13개 조문)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출자 발행 요건, 우선출자 총액제한 기준으로서의 자기자본,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우선출자자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함.

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2조, 제5조, 제11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4조, 제27조,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별표)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의 기준 및 절차,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임직원의 검직, 경영공시 절차,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범위, 공제사업 인가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함.

다. 약칭 용어 변경(안 제2조 등)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약칭용어·의미가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라. 상향입법에 따른 정비(현행 제13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제4항)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령에 있던 신고 수리 및 인가 업무 처리기한을 규정한 조항이 법률로 이동하면서, 해당 부분을 삭제함.

마. 경영공시 기한 연장(안 제12조제3항, 제27조)

결산 재무제표 발행 기간의 소요에 따른 경영공시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공시 기한을 연장함.

바. 권한위탁 규정 정비(안 제32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위탁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위탁 범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설립신고·인가신청·경영공시 내용의 확인 및 감독 시 결과에 대한 조치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동조합연합회”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중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사회적협동조합등과”를 “협동조합연합회등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은”을 “협동조합연합회등은”으로, “사회적협동조합등이”를 “협동조합연합회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협동조합연합회등”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협동조합연합회등”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조 제4항 중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각각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중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각각 “협동조합연합회등은”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3호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을 각각 “협동조합연합회

등”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법 제11조제6항”을 “법 제11조제7항”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사회적협동조합등을”을 “협동조합연합회등을”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협동조합등”을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를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를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경우”를 “경우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부터”를 “제2항부터”로 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우선출자 협동조합)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을 말한다.

1. 우선출자 발행 직전년도부터 법 49조의2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고 있을 것
2. 부채총액을 자기자본(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적립금, 기타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에 결산상의 오류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

다)으로 나눈 비율이 100퍼센트 이하일 것

② 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이란 제1항제2호의 자기자본에서 우선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8조의3(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협동조합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우선출자를 발행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4(우선출자의 청약)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 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이사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의 명칭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자기자본
6.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내용 및 좌수
7.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8. 제8조의10에 따라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제8조의5(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이사장이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제8조의6(우선출자증권의 발행) ① 우선출자의 전액납입이 있는 후가 아니면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7(증권의 형식) 증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제8조의8(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협동조합의 명칭
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 우선출자의 내용
4. 증권번호
5. 발행 연월일
6. 우선출자 좌수
7.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

다)

제8조의9(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

에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추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권의 수와 번호
3. 증권의 취득 연월일

제8조의10(우선출자의 매입소각) 협동조합은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제8조의11(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제8조의12(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증권을 내주어야 한다.

③ 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④ 증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증권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의13(우선출자자 총회) ① 협동조합은 정관이 변경되어 우선출자

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의14(통지와 최고)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협동조합에 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을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임직원의 겸직)”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을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1조제1항”을 “제81조제1항(법 제115조의7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협동조합등”을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를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개월”을 “4개월”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법 제56조제6항”을 각각 “법

제56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제3항”을 “법 제56조제8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0조의2(법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5조제2항)을 “(법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7”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제3항”을 “법 제80조의2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법 제114조제1항 및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법 제114조제1항 및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등) 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115조의2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이 5개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는 법 제115조의4제1항 각 호의 조합 중 둘 이상의 유형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 다만,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회적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임직원의 겸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법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법 제92조·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6”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이”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법 제115조의 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15조제3항)을 “(법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8)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3개월”을 “4개월”로 한다.

제2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제3항”을 “법 제101조 제8항”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2항”을 “법 제105조의2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1조의 제목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를 “(사회

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5조의11제2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32조제2항제5호 중 “(법 제115조제3항)을 “(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로, 같은 호 부터 제7호까지 중 “확인에 관한 사항”을 각각 “확인 및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115조제3항)을 “(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13)으로,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같은 호 및 제9호 중 “확인에 관한 사항”을 각각 “확인 및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115조의3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

제3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115조제3항”을 “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으로,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115조제3항”을 “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제1항”으로,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

합연합회 및 이중협동조합연합회”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법 제115조제3항”을 “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제1항”으로,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중협동조합연합회”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법 제115조제3항”을 “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제1항”으로,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중협동조합연합회”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법 제115조제3항)”을 “(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13)”으로,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중협동조합연합회”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포함한다) 및 제115조의11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중협동조합연합회”로 한다.

6. 법 제85조제1항·제114조제1항 및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중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별표 제2호가목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를 “협동조합연합회등이”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22조제2항(법 제76조·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을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법 제22조제2항(법 제76조·제91조·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5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위반행위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	법 제119조	100	200
-------------------	---------	-----	-----

회등이 법 제22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우선출자의 총액 한도를 초과하게 한 경우	제2항제2호		
--	--------	--	--

별표 제2호 마목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법 제115조제2항)”을 “(법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7)”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법 제82조)”를 “(법 제82조 및 제115조의8제1항)”으로, “(법 제115조제3항)”을 “(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법 제82조)”를 “(법 제82조 및 제115조의8제1항)”으로, “(법 제115조제3항)”을 “(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명칭) ①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는 <u>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u> (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와 <u>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u> (이하 “ <u>사회적협동조합등</u> ”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u>사회적협동조합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u> 하여야 한다.	제2조(명칭) ① ----- ----- <u>사회적협동조합</u> ----- ----- <u>협동조합연합회</u> · <u>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u> · <u>이종협동조합연합회</u> (이하 “ <u>협동조합연합회등</u> ”----- ----- <u>협동조합연합회등과</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u>협동조합등과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등이</u> 나 다른 <u>사회적협동조합등이</u> 등기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 <u>협동조합연합회등은</u> ----- ----- ----- <u>협동조합연합회등이</u> ----- -----.
③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③ ----- ----- -----.

1. <u>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u> 로서 국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가. ~ 다. (생략) 라. 그 밖에 <u>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u> 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1. <u>협동조합연합회등</u>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u>협동조합연합회등</u> ----- ----- -----
2. <u>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u> 로서 시·도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다만,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 다. (생략) 라. 그 밖에 <u>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u> 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2. <u>협동조합연합회등</u>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u>협동조합연합회등</u> ----- -----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명칭의 사용을 금	④ ----- -----

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때에는
해당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
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
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11조의2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말한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
합등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

--- 협동조합연합회등-----

⑤ -----
협동조합연합회등은 -----

-----.

⑥ (현행과 같음)

⑦ -----
협동조합연합회등은 -----

-----.

제3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

-----.

1. ----- 협동조합연합
회등-----

선에 관한 사항

2. (생략)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
합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계
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생략)

제4조(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
회) ① (생략)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협의·조정한다.

1.·2. (생략)

3. 기본계획의 수립과 법 제11
조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생략)

③ ~ ⑥ (생략)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
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
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
조합등을 말한다.

1. ~ 4. (생략)

제2장 협동조합등

2. (현행과 같음)

3. ----- 협동조합연합
회등-----

4. (현행과 같음)

제4조(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
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 법 제11조
제7항-----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협동조합연합회등-----

----- 협동조합연
합회등을 ----.

1. ~ 4. (현행과 같음)

제2장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7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①·② (생략)

③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8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설립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

회의 설립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법 제15조제4항-----

⑤ (현행과 같음)

제7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8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삭제>

신고를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그 처리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④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2항부터 -----

제8조의2(우선출자 협동조합)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을 말한다.

1. 우선출자 발행 직전년도부터 법 49조의2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고 있을 것

<신 설>

<신 설>

2. 부채총액을 자기자본(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적립금, 기타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에 결산상의 오류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나눈 비율이 100퍼센트 이하 일 것

② 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이란 제1항제2호의 자기자본에서 우선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8조의3(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협동조합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우선출자를 발행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4(우선출자의 청약)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신 설>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이사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의 명칭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자기자본
6.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내용 및 좌수
7.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8. 제8조의10에 따라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제8조의5(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이사장이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

	<u>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u> <u>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u>
<u><신 설></u>	<u>제8조의6(우선출자증권의 발행)</u> <u>① 우선출자의 전액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없다.</u> <u>② 협동조합은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8조의7(증권의 형식) 증권은 기명식으로 한다.</u>
<u><신 설></u>	<u>제8조의8(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u> <u>1. 협동조합의 명칭</u> <u>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u> <u>3. 우선출자의 내용</u> <u>4. 증권번호</u> <u>5. 발행 연월일</u> <u>6. 우선출자 좌수</u> <u>7.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인</u>

	<u>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u> <u>제8조의9(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추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u> <u>1. 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u> <u>2. 증권의 수와 번호</u> <u>3. 증권의 취득 연월일</u>
<u><신 설></u>	<u>제8조의10(우선출자의 매입소각) 협동조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8조의11(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u>
<u><신 설></u>	<u>제8조의12(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u> <u>②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증권을 내주어야 한다.</u> <u>③ 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u>

<신 설>

<신 설>

④ 증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증권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의13(우선출자자 총회) ① 협동조합은 정관이 변경되어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의14(통지와 최고) 우선출자

제10조(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생략)

제11조(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법 제46조 및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생략)
2.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2조(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2제2항

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협동조합에 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제10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임직원의 겸직) (현행과 같음)

제11조(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 제81조제1항(법 제115조의7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현행과 같음)
2.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등-----

제12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4개월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① 법 제56조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법 제56조제6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

-----.

제13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① 법 제56조제7항-----

-----.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6조제7항-----

-----.

<삭 제>

④ -----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협동조합연합회 등의 공제사업) ① 법 제80조의2(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2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2. (생략)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

제16조(협동조합연합회 등의 공제사업) ① ----- (법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7-----

-----,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u>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u> <u>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u> <u>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설립</u> <u>동의자”라 한다)이 5개 이상일</u> <u>것</u> 2. <u>설립동의자는 법 제115조의4</u> <u>제1항 각 호의 조합 중 둘 이</u> <u>상의 유형을 포함하여 구성될</u> <u>것. 다만, 이 법에 따른 협동조</u> <u>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포</u> <u>합되어야 한다.</u>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등 임직원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조합	제24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	제24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	제24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
의 겸직) ① <u>사회적협동조합등</u>	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	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	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	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
은 법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	연합회 임직원의 겸직) ① <u>사회</u>	①·② (생 략)	합회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합회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합회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제4항	<u>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u>		사업 이용) ①·② (현행과 같	사업 이용) ①·② (현행과 같	사업 이용) ①·② (현행과 같
에 따라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u>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u>		음)	음)	음)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	<u>법 제92조·제115조제1항 및 제</u>		③ <u>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u>	③ <u>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u>	③ <u>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u>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원	<u>115조의6</u> -----		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관	법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	법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
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	-----.		하여는 제1항 및 제2항과 제25	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	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
만, <u>사회적협동조합등이</u> 제10조	-- <u>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u>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u>		협동조합”은 “ <u>사회적협동조합</u>	<u>연합회</u> ” 또는 “ <u>이종협동조합연</u>	<u>연합회</u> ” 또는 “ <u>이종협동조합연</u>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	<u>합회가</u> -----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	<u>합회”로</u> -----	<u>합회”로</u> -----
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	-----.		로 본다.	-----.	-----.
직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u>사회적협</u>	② ----- <u>사회적협동</u>		제2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영	제27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	제27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
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10조	<u>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u>		공시)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	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	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연합회의 경영공시) ----- (법	연합회의 경영공시) ----- (법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
			조합”은 “ <u>사회적협동조합연합</u>	--, ----- “ <u>사회적협동조합연합</u>	--, ----- “ <u>사회적협동조합연합</u>
			<u>회”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에</u>	<u>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u>	<u>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u>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	-----)-----	-----)-----
			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	-----4개월-----	-----4개월-----

제7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조직변경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2.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5.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영공시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 ----- 확인 및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6.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 확인 및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
제31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생략)	제31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 제115조의11제2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7.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7. ----- -- 확인 및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
<신설>		8.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감독에 필요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확인에 관한 사항	8. -----(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13)-----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확인 및 그 결
제32조(권한의 위탁) ① (생략)	제32조(권한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② -----		

9.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u>확인</u>에 관한 사항 <신 설>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획재정부장관(법 제116조제2항·제3항과 이 영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법 제85조제1항 및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u>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u> 9. ----- ----- ----- <u>확인 및 그 결과</u>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 10. 법 제115조의3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u>확인 및 그 결과</u>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85조제1항·제114조제1항 및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	---

7.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u>사회적협동조합</u>등의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101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u>사회적협동조합</u>등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에 관한 사무 9. (생 략) 10.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u>사회적협동조합</u>등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11. 법 제103조제5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u>사회적협동조합</u>등의 청산 사무 감독에 관한 사무	<u>사무</u> 7. -----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 ----- <u>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u>----- 8. -----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제1항----- ----- <u>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u>----- 9. (현행과 같음) 10. -----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제1항----- ----- <u>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u>----- 11. -----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제1항----- ----- <u>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u>-----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u>사회적협동조합등의 감독에 관한 사무</u>	13. -----(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13----- ----- <u>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u> ---
14. 법 제112조제1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u>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u>	14. ----- ----- -- 포함한다) 및 제115조의11에 따른 <u>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연 락 처	(044) 215 - 5934